

「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6월 1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6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6월 20일

제1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황종철

나. 제안이유

-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,
-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(안 제3조)
-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기능(안 제4조~제5조)
-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(안 제6조)
-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및 요금(안 제7조~제8조)
- 특별교통수단 등의 위탁(안 제9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붙임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용 우

□ 본 「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」은,

- 상위법인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은,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,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기능,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요금, 특별교통수단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서,

○ 검토결과

본 조례 제정안은,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정하여,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·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